(CLSA코리아증권) 정보기술(IT)부문 공시

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3항 및 「금융회사 정보기술(IT)부문 보호업무 이행지침」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공시합니다.

1. 공시 사유

☐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2항에서 권고한 **정보기술부문 인력비율** 미충족

2.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 수준

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	정보보호인력비율	정보보호예산비율
총임직원수 (64명)의 5% 이상 (3.2명)	정보기술부문인력 (3.2명)의 5%이상 (0.16명)	정보기술부문예산 (3,274 백만원)의 7%이상 (229 백만원)

3. 권고수준 충족 여부 및 현재 인력 및 예산 비율(공시일 현재기준)

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	정보보호인력비율	정보보호예산비율
미충족	**충족**	**충족**
4.69% (3명)	33.3% (1명)	13.66% (447백만원)

4.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

가. 정보기술부문 인력 비율의 미충족 사유

☐ 총 직원수 60명 이하를 유지하여 전산직원 3명으로 총직원수 대비 5%이상 비율을 유지하였으나 작년 신규 직원이 입사함에 따라 총원 64명이 되어 비율이 4.69%로 떨어져 이를 공시함.

5.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

☐ 당사는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으며, 2014년 실시한 내부 취약점 분석결과 이용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.

6. 금융ISAC(공동보안시스템) 연계여부

☐ 당사는 ㈜코스콤 고객원장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, 금융 ISAC과 연계하여 사이버 테러 등을 예방할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

본 공시 화면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의 **[투자자지원센터 -> 금융투자회사 정보기술부문 공시]**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2015. 3. 11.

(CLSA코리아 증권 대표이사 숀도날드코크란)